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‘13. 10. 2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산업부, 민간발전소 선정때 평가위원 배제 후
사전배점” 기사에 대한 입장 (‘13.10.29, 경향신문 등)

1. 기사 내용

- ☐ 산업부가 민간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평가위원들을 배제한채 사전에 점수를 배점
- ☐ 평가위원들이 실제로 배점을 할 여지가 거의 없었음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모든 평가는 항목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됨
 - 정량지표는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만든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동일 배점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점수가 같을 수밖에 없음

< 정량지표 예 >

1. 지역수용성

- ☐ 지역수용성 항목은 지자체·지방의회 동의, 주민동의율을 평가하므로 위원별 평가점수가 동일할 수 밖에 없음
 - 지자체·지방의회동의서 : 제출한 경우 10점,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
 - 주민동의 : 지자체가 제출한 주민동의율을 평가기준에 따라 구분 (0~100% 동의시 → 0~15점)

2. 비용지표 : 사전공지된 평가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

3. 계통여건

- ☐ 계통여건(입지적정성, 건설용이성)은 전문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수적인 특성상 당일평가가 곤란하므로 평가위원회 평가대상 아님
 - 계통여건은 평가지표에 따라 한전에서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별도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결과를 적용
 - 또한, 계통여건은 단순히 변전소까지의 거리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, 거리보다 신규 발전기 연계시 기술적인 계통상황이 중요
 - * 신규 발전기 연계시 과부하(인근 공용망 용량 초과), 고장전류 초과(사고 발생시 확산 가능성), 발전기 탈락(송전선로 고장시 발전기 정지)이 발생한다면 훨씬 많은 감점

- ☐ 발전사업의 특성을 감안,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지표 위주로 평가기준을 정한 것임
 - * 과거 전력수급계획은 정량지표로만 평가
 - 정성평가 지표가 정량평가 지표보다 상대적으로 배점은 적으나 정성평가를 통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구조

<정성지표 예>

☐ **부지확보***,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경우 사업자의 계획에 대한 정성평가 영역임

* 부지점수 : 확보수준×용도별활용가능성×부지적정성

○ 부지는 확보수준(소유·계약), 부지용도 부분은 평가기준에 따라 계량평가하고, 이를 토대로 부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성적으로 평가한 것임

* 결과적으로 부지적정성에 대해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하지 않고 참고자료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경우, 이는 평가위원 판단 결과임

○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CCS준비, 연료혼소, 고효율 설비 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 설명을 듣고 재량평가 하도록 하였음

- 온실가스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사전 공개하였으므로 사업자 노력에 따라 사업자들이 동일한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임

☐ **연료 및 용수확보 계획, 재무 및 기술능력**도 정성지표로서 평가위원 판단에 따라 평가

※ 관련 문의 : 전력산업과 박성택 과장(02-2110-4897), 성 시내 사무관(5529)